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“죽”을 “대나무”로, “감안하다”를 “고려하다”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,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(併記)하는 등의 방법으로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등 4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,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법제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4월 ~ 6월) 예정

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
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

부령 일부개정령안
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0호서식 앞쪽 검사결과란 중 “명기하고”를 “명확하게 적고”로 한다.

제2조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소유자(정당한 권원에 따라 임목·죽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를 “소유자[정당한 권원에 따라 임목(立木)·대나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]”로,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한다.

제16조제3항 중 “감안한”을 “고려한”으로, “교부하여야”를 “교부해야”로 한다.

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,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한다.

제4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마목 중 “죽이”를 각각 “대나무가”로 한다.

제4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“죽이”를 각각 “대나무가”로 한다.

별표 1 제1호나목(2) 단서 중 “절취한”을 “잘라낸”으로 한다.

별표 2 I. 제1호나목(4)(다)2)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하고, 같은 I. 제2호바목(1) 단서 중 “굴삭기”를 “굴착기”로 하며, 같은 호 사목(2)(나) 본문 중 “감안하되”를 “고려하되”로 하고, 같은 호 차목(8)의 “암석절취”를 각각 “암석 자르기”로, “브레이커절취”를 “브레이커 자르기”로 하며, 같은 I. 제4호마목(1)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제3조(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1호가목 중 “죽의”를 “대나무의”로 한다.

별표 6 제2호마목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 중 “죽의”를 “대나무의”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 중 “죽의”를 “대나무의”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1) 중 “죽의”를 “대나무의”로 한다.

제4조(「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영 제3조제2항에 따라”로, “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3조의2에 따른”으로, “감안하여야”를 “고려해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(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·죽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(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)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7조(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) ①-----소유자[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(立木)·대나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]-----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6조(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) ①·② (생략)	제16조(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량을 감안한 심사결과에	③-----고려한-----

따라 적정인원의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	-----교부해야-----.
④·⑤ (생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18조(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) 산림청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,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.	제18조(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) -----고려하여-----해야-----.
1. ~ 8.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제46조(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) ① 영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를 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	제46조(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) ① -----.
1. 벌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1. -----
가. ~ 다. (생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입목·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·답	라. -----대나무가-----

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	-----
는 일단(一團)의 면적이 5	-----
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	-----
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	-----
우	--
2. 굴취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	2. -----
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	-----
는 경우	-----
가. ~ 라. (생 략)	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마. <u>입목·죽이</u> 자라고 있고	마. ----- <u>대나무가</u> -----
지적공부상 지목이 전·답	-----
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	-----
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	-----
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	-----
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	-----
취하는 경우	-----
바. (생 략)	바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47조(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)	제47조(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)
①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	①-----
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	-----
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<u>입목·죽이</u> 자라고 있고 지	7. ----- <u>대나무가</u> -----
적공부상 지목이 전·답 또는	-----
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	-----

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	-----
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	-----
경우	---
8. ~ 11. (생 략)	8. ~ 11. (현행과 같음)
②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	②-----
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	-----
· 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	-----
각 호와 같다.	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<u>입목·죽이</u> 자라고 있고 지	7. ----- <u>대나무가</u> -----
적공부상 지목이 전·답 또는	-----
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	-----
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	-----
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·채취	-----
하는 경우	-----

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) ① (생략)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. 1.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사업계획서(산지전용의 목적, 사업기간,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, 입목· <u>죽의</u> 벌채·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,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) 1부 나. ~ 카. (생략) 2. 3. (생략) ③ ~ ⑦ (생략)	제10조(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-- ----- 가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대나무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나. ~ 카. (현행과 같음) 2. 3. (현행과 같음) 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경비의 산정) 산림청장은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납입기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<u>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</u> 경비보조액을 <u>감안하여야</u> 한다.	제4조(경비의 산정) -----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 <u>법 제3조의2에 따른</u> ----- ----- <u>고려해야</u> ----- -----.